위험관리기준

제정 2017. 10. 16
개정 2021. 04. 27
개정 2021. 06. 28
개정 2021. 08. 31
개정 2023. 05. 31
개정 2026. 08. 2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집합투자재산 및 고유재산의 운용과정과 업무영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경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회사가 위험을 부담하는 모든 형태의 자산운용과 영업 및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발생가능한 모든 위험을 관리대상으로 하며, 투자위험(시장·신용·유동성 위험)과 업무영위위험(운영·법률 위험)으로 구분하여 관리 및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위험(Risk)"이라 함은 회사 또는 투자자가 경제적, 비경제적 손실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 또는 잠재적인 손실정도를 말한다.

② "위험관리(Risk Management)"라 함은 위험의 측정, 관리, 보고를 통하여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③ "시장위험(Market Risk)"이라 함은 이자율, 환율, 주가, 파생상품 등 각종 금융변수들의 변화에 따라 재산가치의 변동을 초래할 위험을 말한다.

④ "신용위험(Credit Risk)"이라 함은 채무자, 투자대상회사 또는 거래상대방(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신용등급의 변화나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재산상의 손실위험을 말한다.

⑤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이라 함은 시장에서 거래부족이나 장애 등으로 투자증권 등을 정상적으로 매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함에 따라 재산가치의 변동을 초래할 위험과 투자자재산에서 해지청구가 있을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위험을 말한다.

⑥ “운영위험(Operation Risk)”이라 함은 부적절한 내부절차, 직원 및 시스템 혹은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실위험을 말한다.

⑦ “법률위험(Legal Risk)”이라 함은 관련법규 및 제 계약의 위반으로부터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실,투자자와의 분쟁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의 징계 등을 초래할 위험 등을 말한다.

⑧ “허용수준” 이라 함은 해당 재산에서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위험수준을 말한다.

⑨ “경영진” 이라 함은 집행임원 및 본부장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제정 및 개정)

본 지침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다만,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험관리위원회를 두고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회사는 본 지침에 따라 위험을 관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전적 관리에 의하여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위험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위험을 분산하도록 한다.
3. 회사 각 조직 및 임직원의 위험관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4. 임직원은 평소 업무의 문서화, 보고의 일상화, 반복, 확인 및 상호 체크를 통하여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선관의무)

① 운용담당자는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불필요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고유재산의 운용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있어서 상호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위규조치 및 징계)

① 임직원은 본 지침 및 관련법규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배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소 일정 등을 포함한 정리안을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험관리책임자는 위반사항이 반복적이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부의할 수 있다.

1. 해당 업무의 일시정지
2. 해당 보직의 변경 의뢰
3. 인사위원회 징계 의뢰

③ 운용담당임직원이 본 지침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투자자재산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회사는 관련 임직원에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장 위험관리조직

제8조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① 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그 사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이상으로 한다.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자 중에서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고, 준법감시인과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

제9조 (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회사는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험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2. 위원 : 운용담당부서장,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③ 위원장은 위험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이외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위험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기타 위험관리위원회의 소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 (위험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재산의 위험관리정책의 결정
2. 재산의 위험한도 설정 및 변경
3. 회사의 위기관리대책에 대한 의사결정
4. 위험한도 설정 위반시의 조치사항 심의
5. 기타 위험관련사항

② 위험관리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 (위험관리부서)

① 회사는 운용 담당부서 이외의 조직으로 위험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위험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집행의 감독
2. 재산운용상황의 점검
3. 각종 위험한도의 점검
4. 기타 위험관련사항

③ 위험관리부서는 위험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위험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험관리부서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3장 위험의 관리

제12조 (위험관리의 원칙)

① 회사는 직전사업년도 말의 자기자본을 계산기준으로 하여 적절한 운용금액을 정하며, 구체적인 운용금액은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거래별 또는 상품별 투자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제13조 (위험관리의 목표)

① 회사는 자기자본을 법상 금융투자업자의 필요유지자기자본액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장위험의 관리)

운용담당자는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비중을 적절히 분산하고 허용수준을 준수하는 방법으로 시장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제15조 (신용위험의 관리)

운용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투자할 수 없다. 다만, 위험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득하면 투자할 수 있다.

1. 자본잠식 또는 최근 3년 연속 당기순손실 종목
2. 관리대상종목, 불공정매매, 시세조종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종목

제16조 (유동성위험의 관리)

① 자금담당부서장은 수입, 지출 및 소요예상현금 등을 추정하여 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동성 위험은 보유자산의 유동화 가능여부 및 보유 규모로 측정하고 관리한다.

③ 위험관리위원회는 유동성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유동화가능자산에의 투자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 (위기상황분석 : Stress Test)

① 회사는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유동성리스크를 인식·측정하여야 한다.

1. 회사는 예외적인 상황의 발생에 따른 리스크 변동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유동성위기 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다양한 수준의 시나리오(회사 고유의 위기, 시장전반의 위기, 상호결합된 위기상황 등)에서 현금흐름을 측정하여야 하며, 회사는 위기상황분석시 위기상황하에서 예상되는 현금흐름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영위하고 있는 모든 영업을 포괄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규모, 리스크 속성 등을 감안하여 중요하지 않은 영업부문에 대하여는 완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가. 회사는 과거에 중요하지 않았던 영업부문이 확대되어 회사 전반의 리스크 관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그 영업부문의 자산, 부채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위기상황분석에서 제외된 자산 등에 대하여는 제외한 이유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제외된 자산에 대한 위기상황분석 포함 여부를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를 설계할 때에는 합리적인 가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시나리오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위기상황분석 결과는 경영진 및 이사회 등에 보고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내부정책, 한도 및 비상자금조달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제17조의1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회사는 관련법령 및 기준에 따른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에 대한 효율적 관리·감독을 위하여 별도로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관련 업무처리는 위험관리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8조 (운영위험의 관리)

① 모든 임직원은 운영위험과 관련된 각자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며, 운영위험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위험관리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는 종전 방법에 의한 업무처리시 운영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험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 그 위험요인에 대한 세부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위험관리책임자는 회사의 업무처리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정에서 잠재적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업무 부서장에게 관련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법률위험의 관리)

①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신규로 대외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 계약의 내용이 일상적이거나 경미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규계약의 체결 또는 주요업무처리시 관계법령 등에 대한 법률해석 여하에 따라 상당한 법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법률해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고유재산의 운용에 대한 위험관리

제20조 (운용원칙)

① 고유재산의 운용은 자산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사는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을 준수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이해가 상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자산의 만기구조, 운용대상 및 거래처 등을 적절히 분산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제21조 (운용대상자산 및 운용방법)

① 고유재산으로 운용 가능한 투자대상은 아래 각 호에 한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채무증권 :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기업어음증권 등
3. 수익증권 : 집합투자업자 등이 발행한 수익증권
4. 공모청약,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상장(예정)주식과 그에 연관된 메자닌(CB, BW, EB, RCPS 등)
5. 부동산 및 실물자산
6.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DLS, ELS 등)
7. 비상장주식과 그에 연관된 메자닌(CB, BW, EB, RCPS 등)
8. 기타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한 투자대상

② 제1항의 고유재산으로 운용 가능한 투자대상별 위험의 정도는 아래와 같다.

호	운용자산	위험의 정도
5	부동산 및 실물자산	고위험자산
6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DLS, ELS 등)	
7	비상장주식과 그에 연관된 메자닌(CB, BW, EB, RCPS 등)	
8	기타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한 투자대상	
1	금융기관에의 예치	일반위험자산
2	채무증권 :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기업어음증권 등	
3	수익증권 : 집합투자업자 등이 발행한 수익증권	

4	공모청약,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상장(예정)주식과 그에 연관된 메자닌(CB, BW, EB, RCPS 등)	

③ 고위험자산을 포함한 고유재산의 운용방법은 아래와 같다.

호	운용자산	운용한도	승인	손실한도 (LOSS CUT)
1~4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산	자기자본 범위내	대표이사	원금대비 30%
		자기자본 초과시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	원금대비 30%
5~7	제21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산	자기자본 범위내	대표이사	원금대비 25%
		자기자본 초과시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	원금대비 25%
8	기타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한 투자대상	자기자본 범위내	대표이사	원금대비 25%
		자기자본 초과시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	원금대비 25%

④ 제3항의 손실한도(LOSS CUT)는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제22조 (운용한도)

① 회사는 최근월말 자기자본(설립시에는 설립시 자본금)을 고유재산 운용한도 기준으로 하고, 동 자기자본 범위내일 경우와 동 자기자본 초과일 경우를 구분하여 제21조제3항에 정한 승인 구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최근월말 자기자본은 회사의 최근 월말의 재무상태표에 명시된 자본총계 금액으로 한다.

제23조 (손실한도)

고유재산운용담당자는 제21조제3항에 정한 손실한도에 따라 손절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손절매를 유예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유예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한다.

제23조의2 (자산부채비율 관리)

회사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의3 (단기차입금 승인절차 등)

회사는 고유재산운용을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자금의 차입과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차입은 이사회 또는 위원회(이사회에서 위임한 경우에 한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고유재산의 운용자격요건)

제21조제2항에 정한 고위험자산과 그에 준하는 투자대상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므로 CFA 또는 관련실무경험 5년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춘 운용자가 운용하도록 한다. 단, 고위험자산이 아닌 경우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로 할 수 있다.

제25조 (집합투자재산과의 이해상충금지)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상품과 동일상품 또는 관련 포지션에는 투자를 금지한다. 다만, 위험관리책임자를 통하여 집합투자재산과의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음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투자할 수 있다.

제26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①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회사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을 초과하여 계열회사(대주주를 제외한다)가 발행한 주식, 채권, 약속어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에 한한다)을 소유해서는 안된다..

③ 회사는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공여를 해서는 아니된다.

1. 대주주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2. 대주주를 위하여 어음을 배서하는 거래
3. 대주주를 위하여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4. 대주주에 대한 금전,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 또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거래,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거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하여 법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 (장부외거래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유지)

① 회사는 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아니하는 장부외거래가 발생한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세부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장부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그 거래의 기대수익 및 최대손실 가능금액 추정을 위한 분석표 등을 작성하여 위험관리책임자의 합의를 거친 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고유재산 운용담당부서는 장부외거래에 관한 기록(당해 거래를 위한 계약서와 부속서류를 포함)을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당해 거래의 종료일부터 5년간 장부외거래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 (운용현황보고)

① 고유재산 운용담당부서의 책임자는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고유재산운용현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험관리책임자는 시장 및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위험증대, 이해당사자의 변동,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간 이해상충거래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험관리책임자는 고유재산운용이 이 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부합되게 운용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9조 (현물 등의 확인 및 관리)

① 위험관리책임자는 월 1회 이상 경영지원팀에서 보관 및 관리하고 있는 통장, 인감, 현물 등과 장부를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고유재산운용과 관련된 해당 증서 및 통장의 관리담당자와 거래인감 및 비밀번호 관리담당자는 동일인이어서는 아니된다.

제5장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대한 위험관리

제30조 (운용원칙)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위험관리는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를 본 규정보다 우선 적용한다.

제31조 (집합투자재산의 손실관리)

집합투자재산은 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 및 운용전략에 따라 운용한다. 운용담당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손실이 확대되거나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투자위험이 증가한 경우 그 원인 및 대응방안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험관리위원회는 필요시 보고사항을 검토하여 운용전략의 적정성 검토 및 위험관리 방안에 대하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32조 (투자유의종목)

① 부도, 화의, 법정관리, 상장폐지, 자본잠식 종목 또는 예정종목의 유가증권은 집합투자재산 투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투자경고, 투자위험종목을 신규로 매수할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사전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단, 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사전 및 사후 컴플라이언스 승인 절차에 따라 매수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제한종목에 투자하여야 할 경우에는 투자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전문사모 집합투자업자로 등록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